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57

발의연월일: 2025. 3. 20.

발 의 자: 윤준병 • 주철현 • 송옥주

이원택 • 조계원 • 박민규

허 영·정동영·신영대

민병덕 · 김태선 · 문대림

황명선 · 김윤덕 · 박희승

김우영 · 서영교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선 지중화 사업은 감전 등 전기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의 미관 개선, 보행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시행 되는 사업임.

이와 관련, 국회는 2021년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며 지중화사업의소요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하되,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그러나, 전국의 전선 지중화율은 2025년 3월 현재도 매우 저조하며, 특히 수도권에 비해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매우 큼. 제도 도입시보다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심대하다고 할 것임.

이에 지원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선 지중화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법률 제18280호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5년" 을 "203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	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49조제11호	제2조(유효기간)		
및 제72조의2제3항의 개정			
규정은 <u>2025년</u> 12월 31일까	<u>2030년</u>		
지 효력을 가진다.			